

전파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14781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편

1995년 10월 16일

국 무 총 리 이 흥 구
국 무 위 원
정보통신부 경 상 현
장 관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5호·제92호 및 제93호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9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연주소”라 함은 방송사향의 제작·편성·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8호 본문중 “방송위성업무”를 “위성방송업무”로, 동호가목 및 나목중 “방송위성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의 발사를 수신하는 것”을 각각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18호의2 및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2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의2. 위성운용업무: 위성의 운용, 특히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위성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

19의2. 위성아마추어업무: 위성을 이용하여

행하는 제19호의 아마추어업무

제4조제1항제3호중 “방송업무”를 “방송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로 하고, 동항제30호중 “아마추어업무”를 “아마추어업무 또는 위성아마추어업무”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우주국 등)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무선국이 일으키는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국가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의 신청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허가함에 있어 위성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파수의 합리적 배분등 기술적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것.

제21조제1항중“(선박국 및 항공기국을 제외한 이동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를 “(휴대용 무선설비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우주국 또는 지구국에서 종별 2이상의 무

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

제21조제5항중 “팩시밀리방송등의 종별마다, 또 한 희망하는 주파수마다”를 “팩시밀리방송등(이하 “표준방송등”이라 한다)의 종별에 따라 주파수별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다수의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준방송등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신원증명서”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방송국에 한한다)”를 “(방송국에 한한다. 다만,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와트미만인 방송국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7호중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국(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와트미만인 방송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법 제4조·법 제6조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법 제16조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방송구역은 특별시·도·시·군”을 “방송국별 방송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지정방법과 작성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

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신원증명서”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반국

2. 법 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은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간이무선국

제33조중 “법 제12조 단서의”를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로 하고, 동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관등본”을 “정관사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표의 전파통신기사 2급란의 종사범위란의 제3호바목중 “무선행해국”을 “무선행행국”으로 하고, 동표의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병)란의 종사범위란 및 특수무선기사(레이디올)란의 종사범위란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표의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란의 종사범위란의 “무선전화”를 “무선설비”로 하고, 동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오스부호에 의한 통신조작은 제외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신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신고서를 무선국개설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설비

2.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전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설비

제56조의2제1호중 “측정한”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코드없는 전화기

5.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6.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송신출력이 10밀리와트이하의 구내 무선국용 무선기기

7. 제56조제1항제2호의 무선설비 이외의 수신 전용 무선설비

제57조제1항제2호중 “무선측위국” 다음에 “우주국·지구국”을 추가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3호중 “형식검정”을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 중 “임원의 신원증명서를”을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를 “(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중 “행정준비중”을 “항행준비 중”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매설건물”을 “매설물건”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동항제3호중 “최소축척”을 “최대축척”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4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최소축척”을 “최대축척”으로,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의11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67조제3항”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공동이용계수가 적용되는 무선국에 한한다) 및 법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9조의12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느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4분기의 징수기간중에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방송국 및 간이무선국을 제외한

지상중계

전파법시행령 중 개정령

다)"를 "(주파수공용방식의 간이무선국이외의 간이무선국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주소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방송국을 제외한다)"로, "개설·폐지·운용휴지신고"를 "개설·운용개시·폐지·운용휴지신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제120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중 "간이무선국"을 "간이무선국(주파수공용방식의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로, "개설"을 "운용개시"로, "우체국장"을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호, 제17조의2,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3호, 제46조제1항, 제52조,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제10항, 제59조의3제3항, 제61조제4호·제6호·제15호, 제63조제1항제6호·제2항, 제66조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호, 제90조제1항·제3항, 제91조, 제97조제2항, 제99조,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6호, 제112조의2제1항·제2항, 제11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6조제4호, 제118조, 제119조, 제119조의7제2항, 제119조의8제1항, 제119조의9 및 제121조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 제112조의2제1항·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8조, 제119조의2제2항 및 제119조의13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어업통신"을 "어업통신(제2조제

65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2호를 삭제하고, 비교란 제16호중 "제22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4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다목중 "960MHz 이상의 전파의 폭을 960MHz 이상의 주파수대"로 하고, 동표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목적계수

운 용 목 적	계수
1. 육상이동업무(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중 디지털방식 또는 아나로그·디지털 겸용방식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0.03
2. 무선행정업무(레이디아·트랜스폰더·거리측정기·전파고도계)	0.5
3. 무선측위(표정 및 표지를 포함한다) 업무	0.1
4. 고정업무(도서지역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중 도서통신용에 한한다)	0.1
5. 우주무선통신업무(위성에 설치된 무선설비에 한한다)	0.1
6.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업무	1

비고: 제2호의 무선행정업무의 레이디아중 200톤 미만의 어선에 설치한 레이디아에 대하여는 목적계수를 0.3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9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 바 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확인증명의 대상이 되는 간이무선국을 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제119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신전용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설비중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파법시행령 개정이유

위성시대를 맞아 국내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의 운용에 필요한 무선국의 허가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파사용료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위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의 업무에 위성의 운용, 특히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위성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등의 업무를 추가함
(령 제3조제1항)

나. 무선국을 허가함에 있어서 2이상의 무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무선국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우주국 및 지구국의 경우에는 2이상의 업무를 함께 행하더라도 하나의 무선국으로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함
(령 제21조제2항)

다. 수신전용의 무선설비는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었으나 국제협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설비 및 혼신으로부터의 보호가 특히 필요한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전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설비는 앞으로는 신고하고 개설하도록 함
(령 제56조제1항).

라. 전화사용료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시설자가 당해연도 전파사용료 전액을 1/4분기에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하도록 함
(령 제119조의12제4항).